

조사윤리강령 개정 추진 과정

1. 2005. 1. 28: 조사학회 1차 이사회에서 강남준 조사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촉

2. 2005. 3. 11: 조사학회 운영위원회에 조사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, 승인
윤리강령 개정필요성 제기

위원장: 강남준 교수(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)

위 원: 나선미 기자(동아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)

변종석 교수(한신대 정보통계학과)

류제복 교수(청주대 응용통계학과)

설동훈 교수(전북대 사회학과)

안명규 박사(선거관리 위원회)

이상경 대표(현대리서치)

3. 2005. 4. 8: 조사윤리위원회 소집
윤리강령 개정작업 소위원회(류제복 교수)를
구성하여 작년부터 워크숍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
개정안을 토대로 개정초안 만들기로 결정

4. 2005. 7. 11: 개정 초안에 대해 윤리위원 축조 심의 후 최종안 결정

5. 2005. 8. 26 : 2차 이사회 의 상정
최종 개정초안 확정

6. 2005. 12. 9: 전체 이사회 개정초안 회부 및 확정

개정전 윤리 강령	개정 후 윤리강령
<p>(사)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</p> <p>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사회조사(이하 조사로 약칭)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다. 본 강령은 조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, 조사연구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조사자는 조사과제 수행에서, 그리고 조사의뢰자 및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한다. 또한 조사자는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작업이나 조사과제를 거부한다.</p>	<p>(사)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</p> <p>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사회조사(이하 조사로 약칭)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다. 본 강령은 조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, 조사연구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조사자는 조사과제 수행에서, 그리고 조사의뢰자 및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한다. 또한 조사자는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작업이나 조사과제를 거부한다.</p>
<p>제1조.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.</p>	<p>제1조.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.</p>
<p>제2조. 조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.</p> <p>1. 조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.</p> <p>2.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.</p> <p>3. 조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조사결과를 해석하지 않으며, 그러한 해석을 묵인하지 않는다.</p>	<p>제2조. 조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.</p> <p>1. 조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.</p> <p>2. 조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.</p> <p>3. 조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.</p>
<p>제3조.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사자 2. 조사의뢰자 3. 조사목적 4. 조사시기 5. 조사장소 6. 모집단과 표집틀 7.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	<p>제3조. 조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사자 2. 조사의뢰자 3. 조사목적 4. 조사시기 5. 조사장소 6. 모집단과 표집틀 7.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

<p>8. 표집방법</p> <p>9. 조사방법(면접조사, 전화조사, 우편조사, 인터넷조사 등)</p> <p>10. 질문지(질문내용)</p> <p>11. 재통화·재방문·재발송 횟수</p> <p>12. 표본대체 규칙</p> <p>13. 응답률</p> <p>14. 표집오차</p> <p>15. 가중치 부여 방식</p> <p>16.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</p>	<p>8. 표집방법</p> <p>9. 조사방법(면접조사, 전화조사, 우편조사, 인터넷조사 등)</p> <p>10. 질문지(질문내용)</p> <p>11. 재통화·재방문·재발송 횟수</p> <p>12. 표본대체 규칙</p> <p>13. 응답률</p> <p>14. 표집오차</p> <p>15. 가중치 부여 방식</p> <p>16.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</p>
<p>제4조. 조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.</p>	<p>제4조. 조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.</p>
<p>제5조. 조사의뢰자에 대한 책임</p> <p>1. 조사자는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. 단, 조사의뢰자가 그 정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경우, 또는 본 강령의 제7조에 의하여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2. 조사자는 조사기법·인력·장비 등의 한계 내에서 완수할 수 있는 조사과제만 수용한다.</p>	<p>제5조. 조사의뢰자에 대한 책임</p> <p>1. 조사자는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. 단, 조사의뢰자가 그 정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경우, 또는 본 강령의 제7조에 의하여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2. 조사자는 조사기법·인력·장비 등의 한계 내에서 완수할 수 있는 조사과제만 수용한다.</p>
<p>제6조.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</p> <p>1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,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<u>조사방법</u>을 사용하지 않는다.</p> <p>2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<u>익명성을 보호한다</u>. 단,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3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.</p>	<p>제6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</p> <p>1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,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<u>수단과 방법</u>을 사용하지 않는다.</p> <p>2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<u>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</u>. 단 <u>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</u>.</p> <p>3.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.</p> <p>4. 조사자는 <u>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인 선거운동 등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</u></p>

	<p>다.</p> <p>5. 조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</p>
<p>제7조. 회원 조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본 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. 회원 조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본 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